

2025 임팩트 세법학 I·II 추록 ②

유은중 지음 | JDI BOOKS 출간
2025년 7월 1일 발행

- 이 추록은 『2025 임팩트 세법학 I·II』 제20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SECTION I 2025 임팩트 세법학 I

1. 정오사항

◆ 1쇄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2-67	하 2	(제재성 공과금, 예 : 폐수배출부담금 등)	(예 폐수배출부담금 등)
2-73	상 2	「개별소비세법」에	「개별소비세법」 과세대상

◆ 2쇄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2-73	상 2	「개별소비세법」에	「개별소비세법」 과세대상

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(2025.5.7.개정)으로 인하여 “특정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”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해 주세요.

◆ 1쇄 p.4-112 하7~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-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·제공받는 것
-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하는 것
- ④ 불균등 감사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 : 여기서 “불균등 감사 등 자본거래”란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.
 - 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)하는 거래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㉡ 법인이 자본금(출자액을 포함)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
 - ㉢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
 - ㉣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
 - ㉤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·취득·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·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
 - ㉥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할 때 일부 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거래
 - ㉦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
 - ㉧ 그 밖에 ㉠부터 ㉦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
-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)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◆ 1쇄 p.4-113 상1~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* 여기서 “현저히 낮은 대가” 및 “현저히 높은 대가”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외의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에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 또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(시가 범위 등)의 규정에 따른다.

◆ 2쇄 p.4-112 하11~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-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·제공받는 것
-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하는 것
- ④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 : 여기서 “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”란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.
 - 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)하는 거래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㉡ 법인이 자본금(출자액을 포함)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
 - ㉢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
 - ㉣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
 - ㉤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·취득·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·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
 - ㉥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할 때 일부 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거래
 - ㉦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
 - ㉧ 그 밖에 ㉠부터 ㉦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
-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)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* 여기서 “현저히 낮은 대가” 및 “현저히 높은 대가”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 또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(시가의 범위 등)의 규정에 따른다.

◆ **1쇄** p.4-113 상12~18행 / **2쇄** p.4-113 상6~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①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및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

$$\left[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이} \\ \text{일정한 거래로} \\ \text{얻은 이익}^*1 \end{array} - \left(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의} \\ \text{산출세액}^*2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공제} \\ \text{· 감면액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frac{\text{특정법인이 일정한 거래로 얻는} \\ \text{이익}^*3}{\text{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} \\ \text{소득금액}} \right] \times 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의 지배주주} \\ \text{등이 직접 또는} \\ \text{간접으로 보유하는} \\ \text{주식보유비율} \end{array}$$

*1 (ㄱ)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
(ㄴ)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: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
- 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38조)
- 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39조)
- ㉢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39조의2)
- ㉣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39조의3)
- 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40조)
- 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41조의2)
- ㉦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(상증법 제42조의2)

*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

*3 분모 분의 분자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.

3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2025.6.30. 개정)으로 인하여 종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 해 주세요.

◆ **1쇄** **2쇄** p.3-18 하4~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- ㉠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
- 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「자산운용회계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
- ㉢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. 다만,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◆ **1쇄** p.3-19 상3~4행 / **2쇄** p.3-19 상3~5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

- ㉡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. 다만,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임팩트 세법학 II 추록 ① 정오사항

▣ 임팩트 세법학 II 추록 ①(2025.04.07.) p18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.

▣ 4-66쪽 상7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9-1.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구 분	내 용
(1) 취 지	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 4년 ^① 까지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임
(2) 요 건	내국법인이 해당 법인(이하에서 "출자법인"이라 함)이 출자한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,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함. 이하에서 "재무구조개선계획"이라 함)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①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</p> <p>②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,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</p> <p>③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(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함)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</p> <p>㉠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</p> <p>㉡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,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</p> </div>
(3) 과세특례 (4년까지 3년분할 익금산입)	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함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.
(4) 사후관리	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② 출자법인이 위 (1)의 ② 또는 (1) ③의㉠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③ 출자법인이 위 (1)의 ③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/div>

수정해 주세요

2년

수정해 주세요

2. 정오사항

◆ 1쇄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4-74	상 11	수도권 밖으로	수도권 밖(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)으로
	상 17	수도권 밖에서	수도권 밖(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)에서

◆ 2쇄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4-68	상 9	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	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
	하 7	(3) 과세특례(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)	(3) 과세특례(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)

3. 1쇄 및 2쇄 공통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2-10	하 11	2025년 4월 30일까지는 212원/kg으로 한다.	2025년 8월 31일까지는 234원/kg으로 한다.
	하 1	2025년 6월 30일까지 10.2원/kg	2025년 12월 31일까지 10.2원/kg
2-11	상 1~6	⑤ 유연탄 ~ 으로 함	⑤ 유연탄 : 2025년 12월 31일까지 39.1원/kg
	상 7	2025년 6월 30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
3-92	하 6	다만, 2024년도에	다만, 2025년도에

◆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(2025.4.29.개정)으로 인하여 p.3-46 하 1행~p.3-47 상 1행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- 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택. 다만,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.
 - ㉠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: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
 - ㉡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: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